

제298회 정례회
기획경제위원회

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채인묵 의원 대표발의)

제 안 설 명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채인묵
(더불어민주당, 기획경제위원회)

□ 기획경제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더불어민주당 채인묵 의원입니다.

□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고,
9명의 동료의원들께서 찬성해주신
「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동 개정안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의
개정사항을 반영하여,
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한 곳을
‘골목형상점가’로 지정해
전통시장 지원 사업의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,
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
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